

주거권 관련자료 모음 Ⅱ

■ 법령

■ 정부정책

<참고자료>

-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주택·부동산정책, 주거공공성)
- 집을 빼앗긴 사람들 (철거)
- 아이들, 집을 나와 집을 찾다 (가출청소년의 주거권)
-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생존여성의 주거권)
-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주거권 말하기
(여성, 노숙여성의 주거권)
-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노숙인, 쪽방)

<기타자료>

<주거 관련 기사모음>

- =====
- * 2005년 상반기 기획기사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 참고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음.
 - * 자료의 표시는 성격/제목/저자/출처및출판사/날짜임.
 - * 자료의 성격은 (연)연구자료, (통)통계자료, (법)법령, (정)정부정책자료, (토)토론회자료, (기)기사임.
 - * 자료목록에는 참고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였고 그 중 굵은 글씨로 되어있는 자료가 이 자료모음집에 포함된 자료임. 그 외 자료는 파일로 보관 중.
 - * 주거관련 기사모음은 2005년 상반기에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 매 회의마다 진행한 ‘주거권 브리핑’에 사용되었던 자료 중 파일로 남아있는 것만을 따로 모은 것임.

주

거

관

자

료

보자료실

인권정

ES

11.14.2

주거권 관련자료 모음 Ⅱ

■ 법령

■ 정부정책

<참고자료>

-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주택·부동산정책, 주거공공성)
- 집을 빼앗긴 사람들 (철거)
- 아이들, 집을 나와 집을 찾다 (가출청소년의 주거권)
- 폭력에 노출된 체 갈 곳 없는 사람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생존여성의 주거권)
-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주거권 말하기
(여성, 노숙여성의 주거권)
-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노숙인, 쪽방)

<기타자료>

<주거 관련 기사모음>

=====

- * 2005년 상반기 기획기사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 참고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류 하였음.
- * 자료의 표시는 성격/제목/저자/출처및출판사/날짜임.
- * 자료의 성격은 (연)연구자료, (통)통계자료, (법)법령, (정)정부정책자료, (토)토론회자료, (기)기사임.
- * 자료목록에는 참고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였고 그 중 굵은 글씨로 되어있는 자료가 이 자료모음집에 포함된 자료임. 그 외 자료는 파일로 보관 중.
- * 주거관련 기사모음은 2005년 상반기에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 매 회의마다 진행한 ‘주거권 브리핑’에 사용되었던 자료 중 파일로 남아있는 것만을 따로 모은 것임.

집을 빼앗긴 사람들

- (연) 철거민투쟁사, 전국철거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 (연) ‘땅을 같이 쓴다’ -태국의 철거투쟁 소개와 평가, 김수현, 도시연구소
- (연) 개정된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해설, 이호, <도시와 빈곤>, 1997.3.
- (연)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의 정비와 재건축, 김용창, <도시와 빈곤>, 2004.10.
- (연) 주민참여와 재개발사업, 김수현, <도시와 빈곤>, 1994.6.
- (연) 재개발사업의 실체와 정책적 방향전환, 이진수, 도시연구소
- (연) 재개발구역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평가, 김수현 외, <도시와 빈곤>, 1996.1.
- (연) 재개발의 논리와 갈등구조, 김수현, 도시연구소
- (연)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평가와 해설, 이호 외, <도시와 빈곤>, 1996.1.
- (연) 개발규제와 도시의 성장, 신중진 번역, <도시와 빈곤>, 2000.6.
- (연) 강제철거와 주거빈곤의 확대 / 남원석(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 (연) 강제철거와 주거빈곤, 남원석(한국도시연구소), 인하대학보사, 2002

으로 한 거대한 부동산사건이다. 재개발을 통하여 조성된 검은 자금, 소위 비자금 유통경로를 입체적인 도면을 통하여 밀도 있게 정리하여 보여주었다. 가히 역사적인 사료가 될만한 부패비리단면도의 최상위를 차지한 것은 역시 자본과 권력이었다.

김대중정권은 “IMF를 3년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최우선이다”라며, 마구잡이 해고된 노동자들을 노숙자로 전락시키고 비정규직을 60% 이상으로 확대시켜 버렸다. 그래야 고용이 유연해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라가 산다고 떠들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부동산투기로 이어지고 공적자금을 남발하였다. 국가부도의 원흉인 자본가들에게는 거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동네복이 된 노동자민중에게 책임을 전가시켰다. 현대비자금사건은 헛별정책이 방향을 상실하면서 헛별에 파임노출 된 부동산에 거품을 무한 유발시키면서 동반 파탄 난 원·원 정책이었다. 단군이래 남과 북의 양대 자본가정권과 패권자본이 연루된 초유의 정치음모사건은 공범인 자본가의 자살로 덮어버렸다. 북한자원의 독점암투의 패자 현대그룹과 소유자인 자본가父子가 재물로 사전기획 되었던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체제의 극악한 포악성이 극단적인 자본의 무한탐욕과 정권연장음모로 표출된 것이다.

□ 마무리하며

남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철거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단순히 개발로 인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산과 분배의 불평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주택의 독점과 비자금 조성용 개발정책으로 인한 것임이 자명하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토지주택개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토지·주택공개념을 토대로 국공유자 매각금지와 개발이익이 물수해야한다. 공익기조의 종합계획개발에 입각한 영구임대주택이 대량 건립되어야한다. 1가구 1주택 제도 확립과 토지·주택 초과소유 가중과세 등 전향적인 세제가 수립되어야한다. 순환식개발을 정착시켜 서민들의 인권과 생활권이 명확히 보장되어야한다. 이것이야말로 부동산투기와 거품경제를 청산하고 건강한 경제회복을 함으로써 올바른 정치가 자리 잡게 된다. 이상이 전철연의 주장인 동시에 대안으로 제시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대안들은 순박한 바램에 불과하고 문제는 밀어붙일 힘 바로 국가권력이 핵심인 것이다. 현재 국가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렇다 국가권력은 자본의 무한 이익만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의 강화를 위한 극악한 노동통제로 노동자민중생존권 압살만행에 일말의 주저함이 없다. 이에 대한 전면대응은 명확한 정치적 각성에서 가능하며 이 지점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뚜렷해졌다.

남한자본주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강제철거는 당사자의 단순문제로 설정되어어서는 안 된다. 강제철거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생존권을 약탈당하는 노동자계급 탄압으로 설정되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민투쟁이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토지주택정책의 본질인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수탈을 깨부수고 임금노동체제를 끝장내야하는 계급투쟁이다. ■

'땅을 같이 쓴다' - 태국의 철거투쟁 소개와 평가

김 수 현

1. 글머리에
2. 태국의 '땅 같이 쓰기' 소개
3. '땅 같이 쓰기' 사업의 평가와 시사점

1. 글 머리에

이 글은 태국에서 최근 '철거대상지역의 땅을 지주와 그곳에 거주하는 민민들이 나누는 방식'으로 철거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와 우리나라에서 배울 점에 쓴 것이다. 물론 태국의 제반 사회, 경제적 발전단계나 조건은 우리와 상당히 다르고, 디구나 보자, 주택정책은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땅 같이 쓰기'⁽¹⁾를 우리의 직접적인 운동목표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 것 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를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용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엄밀히 보자면 한정된 땅을 도시자소득층과 그 상위계층들이 '나눠서' 쓰자본 주장이기도 하다. 특히 태국의 이러한 '땅 같이 쓰기'에는 공동체 소유라든지, 협진적이고도 自助的인 개방방식과 같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사항들도 있다. 따라서 이 글이 우리나라 주거권운동이나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로 이 글은 Learning how to compromise and get results from Bangkok, Thailand, Asian Action, 1993

(1) 영어로는 Land-Sharing, 일본어 번역은 土地分有制, 우리말로는 그 의미를 살피 '땅 같이 쓰기'로 번역한다

태국의 땅 나누기

Case Studies of Land-Sharing for field visits, ACHR Workshop presentation material, 1994

NHA, Sonki Land-Sharing Project, 1993

J. Anzorena, マスラムの環境開拓生活誌, 明石書店, 1992 를 중심으로 하여 쓰여졌다. 관련자료들이 필요하면 본 연구소로 연락하기 바란다.

2. 태국의 '땅 같이 쓰기' 소개

일반적인 상황

태국의 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급속히 성장해 왔다. 특히 1987년부터 3년 동안 빠른 두자리 수의 경제성장을 기록해 왔고, 그 결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1960년대 이전에는 태국의 빈부격차는 그리 심하지 않았으며, 도시빈민들도 주로 국공유지나 사용지를 세불 주고 빌려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세가 매월 평당 2바트(우리 돈으로 70원)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를 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급격히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슬럼지역으로 변해 버렸다.

주택청(National Housing Authority)이 197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콕에는 108개의 빈민지역이 있었지만, 이 수치는 1982년에는 410개, 85년에는 1,020개, 90년에는 1,404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가장 최근 조사인 1990년의 조사에 따르면 약 126만명(방콕 인구의 20%)이 이를 빈민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를 빈민지역 거주민의 65%는 지방에서 유입된 인구로, 이를 중 다시 76%는 농촌에서는 도시로 살 수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빈민지역 거주자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그에 따른 무기술로 자영업이나 비공식부문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58%가 임시육체노동, 18%가 장사나 노점상, 18%가 공장노동자이며 단지 6% 정도만이 기술을 가지고 안정된 직장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 노동자들은 대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 혹시 일자리가 있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돈을 버는 사람들이 2.2인에 납한다. 그러나 낮은 교육수준과 불규칙한 일거리 때문에 소득수준은 대단히 낮다.

< 그림 1 > 라마 4가 지역의 개발전과 후

크롱타이 지역

크롱타이는 방콕의 대표적인 민민지역이다. 이 지역은 방콕항구의 한쪽 편에 자리잡고 있는 방대한 지역으로 5,300세대가 살고 있으며, 이 지역 주변으로 다시 5,000여 세대가 기주하고 있다.

1973년 이후 여러 조직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이 지역에서 벌여 왔는데, 일부 조직들은 항만청이 주민들을 철거하려는 데 맞서 강력한 주민조직을 결성하도록 지원했다.

1981년과 82년, 주택청은 이 지역 안의 북쪽 편에 1,512세대가 기주할 수 있는 5층 일대아파트를 건립했다. 그러나 이를 짓에 입주했던 사람들은 일부는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다시 민민지역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낳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항만청은 지역안의 공복 지역을 철거하고 항만개발계획에 따라 컨테이너 창고를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강력한 주민조직의 반발로 철거계획은 무산되었다. 그 대신 주택청은 '땅 같이 쓰기' 사업을 제안했고, 결국 1983년 1월 모든 이해집단의 합의를 끌어내게 되었다. 그래서 일주주민들이 자리를 비켜주는 대신 항구 뒤쪽의 땅을 받아 20년 장기임대형식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 그림 2 > 크롱타이 지역의 개발전과 후

마냥카실라 지역

1982년 1월 주민조직과 민간개발업자 및 보지소유자인 계무성 사이에 협약이 이뤄졌다. 원래 이 지역의 힘상은 6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지역면적의 39%에 달하는 지역이 1974년 대에 재공화되었으며, 나머지는 상업지역으로 개발되었다.

주민조직은 신용협동조합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들은 낡은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다. 이들은 또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연리 9%로 3백만바트(우리 돈으로 약 1억원)를 빌려 이를 다시 10%로 주민들에게 빌려주어 그 차액을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를 빌린 돈은 대개 20년 상환으로 갚아나가는데, 땅은 공동체 소유이며 만약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면 집을 이 협동조합에만 팔 수 있다(학습용어로는 先買權이라 한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외시인이 의한 무기는 봉쇄되어 있나고 할 수 있다.

~ ♪

< 그림 3 > 마냥카실라 지역의 개발전과 후

3. '땅 같이 쓰기' 사업의 평가와 시사점

이상에서 우리는 '땅 같이 쓰기'에 대해 간략하나마 그 개념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 같은 소개로 본 사업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우선 태국상황에서 '땅 같이 쓰기'가 갖는 의미를 우리 시각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땅 같이 쓰기'는 태국만의 사례가 아니다.

최근 아시아나 세계의 주거권관련 단체들에서는 태국의 '땅 같이 쓰기' 사례를 '가난한 사람과 무서들이 땅을 나눠 쓴다'는 정신이 성공한 예로 평가하면서, 이를 소개하는 workshop까지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태국의 '땅 같이 쓰기'를 굳이 짹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모든 주거권 투쟁은 '땅을 나눠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정된 땅을 일부 계층이 독점하면서 남용¹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최소한 잠잘 공간이라도 보장하라는 것이 그 투쟁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삶의 장소를 보장하라(A place to live)'는 기본적으로 '땅 같이 쓰기(Land-Sharing)'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바탕한다면 태국의 '땅 같이 쓰기'를 전세 주거권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태국 특유의 고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서초동 법원 근처의 비닐하우스촌 거주들에게 '땅을 민민들에게 나눠라'고 하면 어릴까? 모르긴 하도, 그 땅을 평생 묵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눠주지는 않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국공유지가 다수 포함된 재개발구역을 계획하고는 임대아파트를 짓는 형태든, 대토를 주는 형태든 어떤 식으로든 소유권이 있는 사람(예를 들면 세입자)들에게 땅을 나눠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물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마간의 돈을 받고 판다해도, 그 땅을 상업시설로 개발해서 인을 이익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공유지를 시민용 택지로 개발하는 것과 같은 '땅 같이 쓰기'를 계획한다면, 민간지주의 땅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태국에서는 국공유지 상에서의 '땅 같이 쓰기' 외에도 순수 민간

14) 수도권의 1인당 가용 택지면적은 4평, 나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강남의 대형아파트들은 한 사람당 15평 이상의 땅을 차지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누울 수 있는 만평도 갖지 못하고 있다.

로지도 '땅 같이 쓰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는 그만큼 태국 복유의 요소가 있다고 보이는데, 전통적인 불교국가이며 국왕 역시 신성시되는 사회분위기도 그런 요소일 것이다. 또 태국 사람들에 따르면, 태국 복유의 낙천적이며 '협상을 좋아하는 태도' 역시 '땅 같이 쓰기'의 성공요소라고 한다.

3) 본 사례는 태국의 현단계 사회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장래를 나관할 수 없다.

실제 1994년 현재, 태국의 빈민시역 거주민들이 시주에게 시불하는 임대료는 소득의 5~1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대체로 15%나 되는 것에 비교하면, 비록 태국의 토지, 주택가격이 최근 엄청나게 폭등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 비하면 그 절대적, 상대적 수준이 훨씬 낮다. 그만큼 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불사분의 관계에 있는 도시화가 세속 진행되고, 한정된 도시공간에 대한 자본주의적 개발압력이 고조된다면 '신양한 지주'는 더 이상 땅값은 끌어올리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다만 노동계급의 주거안정이 자본의 생산성과 계급안정문제에 관련될 때 한해, 국가개발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태국의 '땅 같이 쓰기' 사례는 나분히 현단계 태국경제가 안고 있는 前자본주의적 토지소유와 이용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태국경제의 자본주의화 진행정도에 따라 양상은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¹⁵⁾

4) 태국의 '땅 같이 쓰기'에 있어 정부태도는, 공정한 중재자라기 보다 그 책임을 띠기 한 것이다.

태국의 주거권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주택청이나 왕실 등에서 보인 '땅 같이 쓰기'에 대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혜에 고마워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주의적 주거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민민의 주거대책은 시책이 아니라 태국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산 노동력들에 대한 당연한 몫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빈민들의 주거문제를 지주와 그 땅을 침해한 빈민을 사이의 문제로 친가시키면서 국가와 자본이 아무 책임을 지

15) 물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태국에 비해 경제 발전단계가 낮은 국가들에서는 '태국모형'이 하나님의 저항침입 수 있다. 실제 이를 국가의 주기권 운동단체들은 태국과 같이 '시주가 땅을 나눠서 함께 쓰는 방안'을 무생목으로 삼으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 않겠다는 것은 상식적인 국가이론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 이를 단체가 자발으로 삼고 있는 自助的 해결방식도 마치고 보면 문제가 있다. 즉, 이러한 해결방식은 사실 빈민 주거문제의 책임이 빈민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自助的인 방식, 그 자체는 나무랄 성질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권장할만 하지만 그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왜곡은 심각할 수 있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자조적 주택화보는 국가와 자본의 책임이 선행될 때 보다 의미있는 것이다.

5) 태국의 '땅 같이 쓰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만, 강력한 주민조직 만이 모든 주거대책 수립의 출발점이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몇 '땅 같이 쓰기'의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태국의 철거문제는 우리보다 너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방화와 폭행, 강제철거가 자행되고 있고, 주민조직이 약한 지역들은 철거되어 시외쪽으로 강제이주되거나 다른 빈민지역을 찾아 떠난다. 따라서 어느 나라, 어느 조건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사소한 주거대책이라도 강력한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일이다. 실제 '땅 같이 쓰기'가 가능했던 지역들은 방북에서도 '진실적인 싸움'(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북동, 사당동, 상계동, 본암동 철거)을 치뤄냈던 지역들이다. 따라서 강력한 주민조직(Community Based Organization)과 헌신적인 NGO들은 모든 주거권 투쟁의 필수요건이다.

6)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점이 새겨져 있다.

앞에서 우리는 '땅 같이 쓰기'의 의미를 다소 생략한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면 '땅 같이 쓰기'는 멀토 특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태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빛어낸 하나의 산물에 불과한 것일까? 물론 우리나라 주거권 투쟁의 '화려함'에 도취된 경우라면 '우리보다 못 사는 개발도상국'의 사례가 하찮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사례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그 첫 번째는 '공공체 소유'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나눠진 땅은 공공체 소유가 원칙이며, 부동산투기는 원천적으로 통제된다. 물론 현지 관계자들은 용자상환이 끝나는 10~20년 뒤까지 이러한 공공체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철거민투쟁이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실제로 '사회 소유', '개별가구의 현금보상' 위주로 진행되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땅 같이 쓰기'의 공동체 소유 원칙은 우리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점진적인 주택개량이나, 방곡에서는 내개 '땅 같이 쓰기'를 합의했다 해도, 이들 지역을 한꺼번에 헐고 아파트를 짓든가 하지는 않는다. 일단 지주가 필요로 하는 자리를 비켜준 다음에는, 임시로 집을 지은 후 10여년씩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자기집을 고쳐짓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주택에 대한 기준을 당내의 사회, 경제적 여건 속에서 정합으로써 빈민주택문제 해결에 여유를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설령 내 집이 될 수 있건 아니건 간에, 너도나도 '큰' '아파트'를 원하고 있어서, 빙민지역 혜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시빈민들의 생활양식에는 공동체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으며 생활수준에도 맞는 점진적인 개량방식이 적절하나, 태국의 예에서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

세번째는 자금지원 방식이다. 앞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태국에서는 UCDO⁶⁾라는 주택자금 지원금고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빈민들은 담보로 합당한 계산이 없기 때문에, UCDO는 주민 '공동체'를 담보로 이들의 신용협동조합에 돈을 빌려준다. 물론 아직 사례는 많지 않지만, UCDO는 빈민들의 상호출자를 통해서 '빈민은행'을 만드려는 계획도 있다.

이번 측면에서 이러한 自助的 방식이 갖는 한계도 있지만, '공동체'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누구나 땅도 집도 없는 세입자가 담보없이 돈 빌리기는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공동체 소유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담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도 한 번 적용해 볼만한 내용이다.

이상에서 '땅 같이 쓰기'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평가를 정리했다. 그러나 이 글은 전문적인 분석이라기 보다는 아이디어 제시 정도의 '감상문'이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한국적 적용은 협동조합주택(Housing Cooperatives) 논의 속에서 풍부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감상문'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연구들을 기다린다.

6) Urban Community Development Office는 지역아세안, '빈민지역 개발사무소'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청 산하조직이다. 그러나 이사회에는 주민 및 NGO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은행들이 빈민들에게 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빈민들에게 '다가가서' 돈을 지원하고 공동체 조직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참신하다. 물론 정부산하 조직으로서 갖는 한계도 적지 않지만, 그 운영여력이 따라 가능성은 많아 보인다.

개정된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해설

이호(주민운동연구실)

1. 들어가는 말
2. 개정된 서울시조례의 내용
 - 1) 서울시의 안 중 반영된 부분
 - 2) 투기적 성격의 방지
 3. 서울시 조례개정의 사사점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지난 노시와 반은 24호에 서울시에서 의회이 제안한 '서울시 재개발사업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해설을 칠었나. 당시의 글에서도 언급했거나와,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회에 상정한 개정안은 매우 투기적인 인을 담고 있었다. 물론, 세입자들이 대한 임시거주시설 등의 조항이 표지 있어 대체로 부분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 토기요소를 외치하고 헌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일자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고, 일상적으로 빌어지는 재개발조례의 비리를 막기 위함 여러 가지 장치도 제안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월 15일에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

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의해 저안된 혁신적인 내용들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여, 재개발 사업은 여전히 투기적인 성격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노력은 지역의 기득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의원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것이다.

이 글은 개정된 서울시 개발조례의 주요한 내용을總括해서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긴밀하게나마 이 조례가 동과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할 것이다.

2. 개정된 서울시조례의 내용

1) 서울시의 안(案) 중 반영된 부분

(1) 주변환경 및 도시계획과의 조화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서울시의 안을 수용하여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구역의 범위는 침경구역, 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사항, 건축시설의 배치 및 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구도 및 주민의 의견과 부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 주거환경과의 조화와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개발사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고 공원과 녹지를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위해 지그다리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서울으로써 파생되는 노동교통의 혼잡, 산위에 고층아파트가 세워지는 현상 등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지 되었다.

(2) 순환식 재개발의 명시

지난 95년 12월 말에 통과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순환식재개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개발 구역이 물리적으로 끊어지거나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뒤 "다면,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시 순환식 재개발이 시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용적률의 제한

조례 제7조 제5항 제6호에서는 "구역의 부지별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지구에 적용되거나 주민부분(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은 최대 3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용적률의 제한은 많은 개발조합으로부터 반발을 샀던 부분이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사업에서 보너 분양아파트의 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개발이익의 현저한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서 무조건 높은 총수의 아파트를 시어 개발이익을 많이 늘려가는 의도에 일정 정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조례는 개발 구역이 독자적으로 지정되어 발생하는 도로교통의 혼잡, 서울시 스카이라인의 훼손 등 도시계획학의 조화를 과제하던 기존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조합운영의 민주화

서울시의 안과 같이, 조합의 주민동의시 정관에 대한 동의도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제11조 제2항 제8호), 제11조 제3항과 제5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권리변동과 권리의 의무승계 등을 의무화하였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할 때, 선정된 자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는 무자격 임원들이 의해 조합의 비리가 반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 제14조 제4항과 제17조 3항에서는 조합원 총수의 1/5 이상이 요구할 경우 즈합원총회를, 디의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이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분양가구수를 기존의 2%에서 1%로 축소하였다.

(5) 임대주택 평수의 다양화

기존의 임대주택 평수는 전용면적 7평(30m²)-10평(33m²)이었나. 그러나 이번이

개정된 조례에서는 임대주택의 평수를 전용면적 9평(30m²)-13.6평(45m²)으로 넓여지고 다양화되었다. 기존의 임대주택 대상자들의 가구증진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공정적으로 개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대료의 정도를 조정하더라도 평수는 입주예정자들의 조건에 맞게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더욱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2) 투기적 성격의 방지

개발사업이 현지 주민들의 증기고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투기적인 용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 현상은 현지 주민들보다 외지에 사는 소유권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는 외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개발지역 내에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더라도 모두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시 조합원들에게는 정약없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가입, 추첨에서의 당첨 등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허가주택이 국공유지에 건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그 무허가주택이 차지하는 드지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싸게(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함) 불하받을 수 있고, 또 건물의 강정가만큼 분양가에서 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배분되므로,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는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한 것이 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발지역의 투기적 주택을 미리 구입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은 나침을 진전하고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고 있다. 실지 부동산 관련 잡지나 신문을 보더라도 1000개개발 지역, 시금이 구입의 적기 등의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빨리 무허가 주택을 구입하라고 홍보하는 내용이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개발지역의 조합원들 중 평균 60%이상이 외지에 거주하는 이들이나, 이들 중에는 무주택자로, 개발지역의 투기가 주택을 구입하여 평생 숙원인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외지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개발구역안에 이전 치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무허가 분양촌의 주거환경개선이나 내 집을 마련하자는 목적보다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팔 경우 생기-

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목적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므로 재개발사업에서 투기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현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만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1가구 1주택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시는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가구 1주택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인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서울시 의원들에 의해 거부당하였다. 물론, 서울시의 안은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재산권' 보호라는 명분과 대치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논란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주택이 공공재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경우 이 암이 판결되는 것이 그리 불가능한 짓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울시 의원들은 올바른 풍공정책의 관점보다는 재개발지역에서 투기이론을 얻으려는 이들의 압력에 굴복해 이 암을 전면 삭제하였다.

3. 서울시 조례개정의 시사점

결국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의 조례개정은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의 평수를 브다 다양화한 것 이외에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모 주간지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재개발사업이 전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 즉, 약간의 개발이익이 줄어들고, 서민자본에게 돌아갈 임대주택의 평수가 약간 늘어났다는 것 이외에 재개발사업의 성격은 전혀 바뀌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시의 안이서도 주거생단계에서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임시기주시설의 보상 등이 생략되어 있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처럼 주신은 서울시의 선량적인 개혁노력에 주거권운동단체 및 관련 ^{주민}운동단체가 힘이 몇 불여, 서울시에 힘을 모아주고 우리의 주창도 저도화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일 수 있었다. 그러나 재개발조례를 들러싸고 서울시와 재개발사업에 이해가 경원 이들의 로비를 통해 업은 서울시의회간에 벌어졌던 대립은 치열하였다. 가뜩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 정책의 방향이 좌우되며 우리의 관료사회 현실에서, 정치인들과의 의견

대립은 관료들로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안에 의하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이들은 서울시 의원들에게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에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과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해 운동하는 이들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개혁의지는 초라해 질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이번 서울시 재개발조례를 둘러싼 논쟁의 결과는 기득권층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초에 조례안을 상정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현재 자신들의 익기(義氣)가 개인에 대해 많은 희익을 끼고 있다는 점이며, 그나마 올바른 주택정책을 소리높이 외치던 시민운동단체 및 주민운동단체들에 대해서도 믿을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서울시의 조례안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반대를 했던 의원이 서울대를 졸업한 유명한 운동권 출신의 야당의원이었다는 데에 서울시는 더욱 조소를 금치 못하고 있는 듯하나.

어쨌든 서울시의 재개발조례는 개정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조례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너 나아가서는 보나 올바른 재개발을 위해 도시재개발법을 뒤틀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우리가 직접 나서서 개정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서울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비교적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무허가 불량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제도개선투쟁을 지금과 같이 동반시한다면 우리는 얼마남지 않은 재개발지역에서도 과거와 같은 힘겨운 트집을 만날하기만 하는 우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개발이익의 환수시스템의 정비와 재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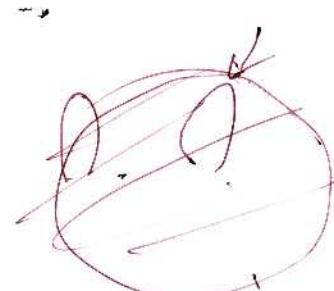
김용창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1. 개발이익의 환수와 환수제도

1) 개발이익의 정의

개발이익은 다양한 요인으로 상승한 토지가치의 증가분을 통상의 미하며, 증가분에서 어느 부분을 환수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국가, 시대마다 다르게 발전해 왔다. 통상 처음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정의하고 환수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영국은 이미 1492년 땅과재건설로 인한 편의 대가를 수익자부담금 형태로 징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및 환수대상은 공공투자에 의한 증가 ->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한 증가 ->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증가로 확대해 오는 주제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가상승분에서 토지소유자의 적절적인 투자를 제외한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발이익 환수방법은 ① 가장 넓은 의미의 개발이익 개념인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노력부분을 공제한 이득에 대해 일부를 자본이득세(영국소득세)로 환수하며, ② 공공투자 및 토지이용 계획 결정·변경관련 개발이익의 경우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기부개념(dedicated on-site facilities) 및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개발사업 주변지역인 경우 수익자부담금제(special assessment) 등으로 환수한다(정희남, 2003).¹⁾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발이익의 개념을 확대하여 오고 있다. 도시계획법(제정 1962.1.20 법률 제383호) 제9조(수익기부금)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토지소유자의 투자를 공제한 지가상승분을 개발이익의 환수대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개발이익 정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경비 등에 의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의 이익으로 규정하였다.

1989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개발이익은 ① 개발사업의 시행, ②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③ 기타 사회·경제적

1) 개발이익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mellioration, betterment* : 공공투자에서 비롯된 편익증진, *planning gains* : 개발사업의 인·허가에서 초래된 이익, *development gains* : 토지개발 및 전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 *impact fees* : 새로운 개발사업이 공공기반시설에 미치는 거주 및 재정적 악영향을 감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개발영향 부담금, *in-lieu-fees* : 기부채 날이나 시설부담에 같음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대체부담금, *capital gains* 및 *windfalls* : 지가상승으로 얻게 된 우발적인 이익

이 가운데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며,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89.12.30)로서 도입하였다.

부과기준 및 부담률은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text{개발이익}(\text{종료시점지가} - \text{개시시점지가} - \text{정상지가상승분} - \text{개발비용}) \times 25\%$$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자동차사업 등 총 10개 종류 30개 사업이며, 사업면적의 도시지역 990㎡ 이상(6대도시는 660㎡), 개발제한구역은 1,65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경제여건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또는 부과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다. 즉 1998년 IMF 위기로 인하여 '98.9.19~99.12.31까지 면제되었다가 2000년 1월 1일부터 재부과하였고 부과율도 50%에서 25%로 완화하여 시행하였다. 2001년 12월 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인가받은 사업부터,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인가받은 사업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 제3차 부동산가격 급등국면을 맞이하자 새로이 개발부담금 부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활 관련 최근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03년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부과를 중지키로 하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지역에 한해 계속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함.

② 2003년 10월 29일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에서 수도권은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이후에도 계속 부과할 예정이며, 비수도권도 부과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③ 2003년 12월 9일 개발부담금 부과 현장 등을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는 부과 중지를 의결함.

④ 2004년 1월 13일 부동산시장안정대책반 회의에서 2004년 중 개발부담금 개부과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⑤ 2004년 2월 20일 경제장관간담회(토지규제개혁관련)에서 토지규제완화에 따른 지가상승을 축소할 수 있도록 수의 환수, 시설비용부담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검토하기로 함(개발사업 종료단계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

2. 개발이익환수체계의 문제와 재정비

1) 개발이익 환수체계의 문제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개발이익환수체계상의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토지공개념 시대 이후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개발이익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지만 환수대상은 최소화 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공공투자사업에 국한한 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양도소득세제가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공공사업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협의의 개발이익도 환수하지 못하면서 광의의 개발이익까

지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이익의 개념과 체계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103개 법률에 의한 부담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부담금이 많으며, 개별법상의 특수 목적을 위한 부담금이 대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담금경외는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와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비과세적 개발이익 환수장치라고 볼 수 있는 기반시설연동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주가상승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기반시설 부담은 원인자 부담으로 제도화한 것이나 수익자부담의 성격도 있음), 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계획수단이며, 개발이익이 그대로 현지화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환수방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2) 개발이익환수관련 기본법제의 도입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규제완화를 통한 토지공급확대 방안은 개발이익 환수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사전에 개발이익 환수관련 기본법제를 정비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 법 제관소 관련 관례에서도 개발부담금제의 의의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기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과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는 블로소득적인 이익 이므로 그 보호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인구에 비하여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부담금제도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시한다 있다(98법 바19, 2001.2.22).

선진 외국에서도 사회정의 차원에 입각하여 「실현이익」을 차분에 의한 경우만으로 쉽게 해석하지 않고 그 개념을 실계적으로 파악하여 개발이익을 적극 환수하고 있으며, 덴마크(개발이득세), 프랑스(기반시설세), 네덜란드(개발부담금), 독일(기반정비시설부담금), 영국(시설경비부담), 미국(Impact Fee) 등이 그 사례이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사실상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기본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징수와 효과의 측면에서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공간적 차원을 갖는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공간적 차원에 해당한다.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블로소득을 자본이득 환수장치로서 양도소득세와 개발에 따른 이익의 환수장치로서 개발부담금제로 이원화하고, 개발이익환수장치는 사실상 개발부담금제(또는 개발이익금제로 명칭변경)로 일원화하여 포괄적으로 운용 할 필요가 있다.

부과 대상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증가를 환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에 수반하여 자목이 변경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증가를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비록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용도전환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증가를 환수의 대상인 것이다. 단순히 자신의 노력이나 비용투자에 의하여 지가상승을 가져오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심지재개발사업이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사업의 경우 종전 지목이 '대가' 아니거나 규제가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유형 및 계기별로 환수방법을 법제화 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시행(도시계획시설 설치, 도시개발 등), 용도전환(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 농지와 산지의 전용 등),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자연환경·기후·인구·인력 등) 또는 국토계획법 55조의 허가대상 개발행위 유형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부관에 의한 각종 시설부담 등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법개편소관례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미실현 개발이익(보유과정)의 환수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지가는 상승하며, 이 때 발생한 증가는 블로소득으로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에서 상승한 지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비용투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의 개발이익환수는 소위 죄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제도구성에서 기본이 되어야 한다. 종래 수익자부담금제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종래 수익자부담금제는 개별법에서 부과구역을 정하지 않은 것도 많았으나, 도로사업은 도로폭원의 3배, 도시재개발사업은 지구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서울시 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행지구의 인접지로 정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환수범위를 정하기 어려워 수익자부담금은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용도전환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환수하여야 한다. 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의 경험에 기초하여 용도지역·지구·구역이 규제완화 내지는 해제로 인해 지기가 상승하였을 때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소지와 관련하여 이 경우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준농림지역에서 충분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채 사업을

추진했던 민간개발업자의 토지개발 경우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재건축사업의 경우 개발밀도의 증가 등으로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도 재개발사업과 달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3.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1) 재건축사업과 주택공급

비노동소득 기반의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체계를 근본적으로 계정비하고, 이를 속에서 재건축 개발이익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와 더불어 기성시가지로부터 주택공급이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규택지 공급방식이 아니라 기존 택지재고, 즉 기존 시가지 및 주거지의 재정비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수단은 뉴타운 정책,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책을 들 수 있다. 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시재생 및 장소마케팅(urban regeneration and place marketing)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주도의 쇠퇴하는 도시지역의 재개발이 품을 이루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정책은 체계적인 주민체계와 계획이 경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추진에 많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도 상황에 따라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전철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당장 추진할 수도 없으면서 정사진만 먼저 멀찌 보인 것은 개발시대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재건축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재건축 단지가 차단되면 서 억제하는 정책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재

2)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사유

2003년 10월 29일 종합대책에서 2단계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방안으로 ① 종료시점(준공인가)과 정비구역지정시점의 지가상승분의 일정비율을 부과, ②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부과, ③ 일반분양분의 분양가 규제와 채권입찰제 제도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지가상승의 기반이 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용적률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소유자가 득점하면서 투기수요, 점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해당 단지 건설 당시 택지의 강제수용, 분양가 규제, 주택기금융자 등 공공재로 공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유화되고 있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수단이 없었다.

또한 재건축 본래 취지와 달리 재산증식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고,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으로 불필요한 환경문제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대두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서울 강북과 강남), 단지(고밀도와 저밀도) 사이 개발이익의 차이가 커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점값 상승의 원인을 제거하고 사회적 평평성을 제고하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2)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불완전한 도입

부동산 공개념위원회에서 처음에 검토하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법 대안은 다음 네 가지였으며, 이를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① 재건축사업 시행 전후 지가상승분의 일정비율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② 용적률 상승분을 금전가치로 산정하여 일정비율을 부과

③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임대주택건설 의무부과

④ 시세와 분양가의 차액을 국민주택제한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토지비, 건축비, 간접경비 등을 구성요소로 하여 규모별 및 지역별로 분양가를 정하고, 평가상승률에 따라 분양가를 연동시키는 분양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결합방식)

<표 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별 장단점

방안	장점	단점
①안	- 개발 이익 환수법을 보완하여 비교적 쉽게 적용 가능	- 지가상승폭이 적어 실효성이 적음. 따라서 근본대책으로 부적절함
②안	- 개발이익 환수 위주에 가장 적합	- 일반분양자에 비용전가 가능성이 크며, 사업시행 인기를 받은 경우 소급적용이 곤란함(저밀도지구 대부분 인가완료)
③안	- 사회적 통합효과와 부족한 임대주택 확보 가능	- 재건축 위축 가능성성이 가장 큼 - 사업시행인 기간, 분양 가격은 경우 소급적용이 곤란함(저밀도지구 대부분 인가완료)
④안	- 개발이익을 조합, 공동, 분양자가 함께 공유함 - 국민주택기금 축당이 가능하고 준조세서비스 활용	- 주택청약과열, 공급위축, 품질저하 등 분양가 규제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 재건축만이 아니라 공공택지에도 확대적용 필요

이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 절차간소화 및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을 7월 13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6월 7일 부동산공개념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6월 7일 열린 회의에서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방안 등을 담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방안을 확정하였다. 개발이익환수제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정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과밀억제지역으로 뮤인 곳은 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며, 기사사업승인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다. <표 5>는 이러한 환수방안에 따른 부담금 부담정도를 산정한 것이다.

<표 5> 재건축아파트 단지별 개발부당금 부당내역

구 분	용적률 변화	평 당 분양가 (만원)		세대당 부담금 (백만원)
		100→200%	100% 상승	
일반 재건축	100→200%	1,500	8,000	4,875
	100% 상승	1,000	500	1,750
1대1 재건축	100→250%	1,500	5,600	3,413
	70% 상승	1,000	500	1,225

주 : 단지규모 1,000세대, 연면적 25,000평 기준.

자료 : 주거환경연구원, 2004.

<표 6> 재개발·재건축사업별 개발이익 환수비교

	주택제작부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건축
· 소형주택	· 60m ² 이하	40%	30%
	60~85m ²	40%	40%
· 임대주택		17%	20%
			-

주 : 재건축 임대주택의 편적비율은 증가된 풍차율의 25%로 전체면적기준으로는 515% 수준임.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을 추정하여 보면, 수도권(서울포함) 소계의 주요 재건축단지(111개)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인 용적률을 감안해 앞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할 임대아파트 물량을 주산한 결과 18평 기준으로 서울 3만2914가구, 경기 1만4751가구, 인천 4876가구 등 5만 2541가구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임대아파트(24만1184가구)의 22%에 달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임대아파트(13만1140가구) 물량의 40%에 해당되는 물량이다(스피드뱅크 조사).

4. 글을 맷으며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서 개발이익환수수단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적 부동산투자와 비노동소득(unearned income)에 기반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경우 민간택지개발에 해당하는 경우이기에 위현소지를 줄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한 결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도가 되었다. 이는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용도지역 변경 등의 개발이익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비하고, 도시기본밀도제에 근거한 개발권 분리와 시장거래허용방법을 도입하면 기존 법제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급과 관련하여 기존 시가지에 일관되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특별히 재건축아파트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급을 재개할 수 있고, 반발이 감소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03, "2003년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신정에 대한 업무지침".
 김용창. 2003, "주택 문제와 개발이익의 환수 및 지역균형발전",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정기 학술대회 발표자료.
 김용창. 2004, "한국의 토지주택정책", 부연사.

- 류해웅. 1999,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구성 방안", "새로운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집.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2003,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 회의 자료.
 서순탁. 2004,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와 공익성회복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토론회 자료집. 새국토연구협의회.
 이동환. 2004,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의 과금 효과", 한국주택정책사업조합협회 세미나 자료.
 이용만. 2004,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도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주택학회·한국주택협회.
 제정 경제부. 2003, "토지규제개혁추진", 토지규제개혁추진회의 자료.
 정희남.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국토연구원.
 홍인숙. 2004, "주거빈곤제 중의 주거실태와 지원방안", "국토", 270호(4월호), 국토연구원.
 King, P. 2003, "Housing as a Freedom Right", Housing Studies, Vol.10(5).
 Nelson, A & M. Mbody. 2003, "Paying for Prosperity: Impact Fees and Job Growth", A Discussion Paper Prepared for The Brookings Institution Center in Urban and Metropolitan Policy.
 Plimmer, F & G. McGill. 2003, "Land Value Taxation: Betterment Taxation in England and the Potential for Change", FIG Working Week 2003.
 Reactor, R. E. et al. 2004, "Understanding Poverty in America", Backgrounder no.1713, The Heritage Foundation.
 海老坂良吉. 2002, "住宅問題と土地政策", "都市と土地政策", 早稲田大学出版部

주민참여와 재개발사업

김 수 현

목 차

1. 머릿말 :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의의
2. 재개발사업의 성격과 주민참여 실태
 - 1)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
 - 2) 주민참여 실태
3. 재개발사업의 주민참여 방안
 - 1)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 2) 재개발구역 주민의 특성
 - 3)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4. 참고자료

1. 머릿말 :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의의

주민참여란 어떤 사업의 시행여부에 적·간접적으로影響가 관여되어 있는 당사자로서의 주민들이 그 사업의 계획수립과 시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는 (1) 사업대상 지역(주민)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를 수렴해서 계획이 반영시키고, (2) 참여자간의 상충된 이익을 중재, 조정하며, (3)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협조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4) 지역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소수의 권리들 보호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런데 '계획'을 연속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보면, 주민참여란 (1) 계획수립과

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가 (2) 다른 대안을 제시할 자격을 갖고 있는가 (3) 최종 계획을 수용하거나 기부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세 가지 점을 충족해야 한다 (Bellush: 278). 따라서 이런 의미의 주민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권'과 민주주의적 새 권리의 신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완전한 주민참여는 완전한 민주주의와 병립되어야 할 문제이며 (Wilson: 418), 민주주의가 잘 보장될수록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Sanoff: 1~3).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표현이다. 대부분 도시 세획사업이 철저한 비밀속에 입안되고, 공람이나 의견신청과 같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건설적이고 친환경인 제안 보다는 집단적인 사위나 권력기관에 대한 로비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성숙과 함께 주민참여가 계획과정의 중심을 이룰 것은 자명하나. 즉,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해집단의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로서의 주민참여뿐 아니라,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계획과정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Wilson: 410~411).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근린사회를 바탕으로 한 많은 자주적 주민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물론 초기에는 지역이 기주의내지는 집단이기주의(=NIMBYs) 요소가 무각되겠지만, 이는 그간의 하향식 계획과정에 대한 만발로 일어난 파도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히려 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그간 소외된 정치과정을 블루리 민주주의를 통해 활성화시킨다면 지역이기주의가 정치적 협상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주민참여는 단순히 '시민사회 성숙'의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것 이 아니기에 본격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시민사회를 성숙시키는 주요한 정치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자가 도시계획 영역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민주 사회를 알망기는 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현행 재개발제도를 제대로 고치는 일에 있어서도 주민참여론의는 중요하다. 우선 그간의 재개발사업이 엄청난 사회갈등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데는 첨예한 자본논리가 깊이 침투되어 있으며, 이것은 이미 여러 글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논리를 강조하는 것으로는 주민입장에서 재개발사업의 비전을 세우고 대안을 수립하는 일로서는 미흡하다. 실제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주민참여', '새로운 주거문화',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역할'과 같은 세세한 주제를 중심으로 대안이 제시될 때 더욱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비복 문제제기 수준에 그칠지 모르지만 현행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참여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2. 재개발사업의 주민참여 실태

1)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

재개발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내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거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3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시행자가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때, 관합시장이나 교수는 관제서류(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서,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사본을 30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인가신청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내에 관합시장이나 교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건설부장관은 송부된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사업기간 중 공람은 구역지정 후 14일, 사업계획검정 후 30일, 사업관리처분계획수립 후 30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의 주요 수단은 공람기간 동안의 의견서 제출과 동의이며, 조합이 시행자일 경우 토지와 가옥의 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 중 조합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적극적인 방식의 의견 개진과 수렴은 불가능하고, 공의나 의견서 제출과 같은 소극적인 방식의 주민참여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조합마저도 뛰어에서 언급하게 되겠지만, 민주적 절차에 바탕을 둔 운영이기 보다는 참여건설업체와 갈박한 일부 '유지급'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주민참여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해서는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각각의 2/3이상의 동의와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에 3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세대주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 등이 당해 지역안에 세입자를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당해 지역안의 세입자 세대주 총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1/2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 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7일이상 관계서류 및 도면을 당해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공고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일내에 시장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지구지정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동의가 수반되긴 하지만, 지구지정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 이후의 사업계획에 관한 공의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지구별로 설문조사나 설명회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표자의 간접참여 방식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위와 같은 제도는 '의견수렴절차'라고는 볼 수 있지만 '주민참여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는 '주민이 행정의 절차에 참여'하는 행정편의적인 참여로, '주민주체'라는 기본 이념이 구현되기 힘들다. 그럼 실제 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주민참여 실태를 살펴보자.

2) 주민참여 실태

먼저 최근의 불량주택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⁷⁾에서 나타난 주민참여 실태를 정리해 보자.

주민들이 얼마나 재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그 사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밝힐 수 있다. 조

7) 일본에서는 주민참여라는 표현이 생정을 주체로 두고 주민이 보조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행정참여'를 강조해서 쓰기도 한다(奥田道大: 137~52).

8) 대한주택공사(1993) 조사는 전국 6대도시 20개 불량주택지역의 983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에 따르면 가옥주 가구의 62.1%가 현재의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세입자 가구는 64.6%가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현상은 서울을 제외한 도시들이 더 심각해서 지방도시의 경우 70%에 가까운 주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

< 표 1 >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도

(단위 :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계
가옥주	46.2	34.1	30.2	34.8	30.2	22.1	35.1
세입자	37.1	25.3	22.1	23.2	29.1	21.0	30.6

다음으로는, 위와 같은 주관적인 '안다 - 모른다'의 기준외에 보다 구체적인 차도로써, 사업장이나 제도에 대한 참여여부를 살펴보았다. 힌트 제도에서는 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자신의 입장장을 밝힐 수 있도록 공개와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제 이 제도를 활용한 사람은 각각 가옥주의 2.6%, 1.5%에 불과하다. 더구나 세입자 가구의 경우는 불과 0.1~0.6%만이 이 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동의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신이 동의했거나 대답한 경우는 32.5%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나 아님 수 있다. 더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조합이나 주민총회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2 > 개발사업 절차에 대한 참여도

(단위 : %)

구 분	공개	공청회	주민공의	주민총회	조합	이의신청
가옥주	2.6	8.2	34.2	21.7	33.8	1.5
세입자	0.1	5.3	30.7	15.4	0.2	0.6

다음으로 실제 재개발지역에서 주민참여문제와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자.³⁾

◆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장애

각종 개발사업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정확성을 살펴보면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개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은 '가옥주민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나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을 내야 한다더라'라는식의 편협하고 단편적인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가'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나마도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사업과정상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대강의 기본적인 윤곽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 이를 들여 행정관청과 소통, 시공자 간의 관계나 역할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간접참여의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주민참여는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주민참여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시행자측과 주민들 모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관공서나 시행주체가 주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대체로 대부분 홍보나 선전은 유인물을 돌리거나 한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정도로 그치고, 그나마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정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다 효과적인 홍보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시행주체는 한두 차례의 설명회를 하고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당신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니까 믿고 따라오라'는식의 패포적인 태도로 일관돼 왔다.

둘째로, 주민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주민들은 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강의식 설명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과 관련한 문제가 될예 한 상태로 발전되거나 혹은 그 배우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먼저 생활에 금급해서 시간을 내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고, 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한 때문이

3) 다음은 대한주택공사(1993a)의 관련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기도 하다. 참석하지 않는 주민들은 ‘당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단순히 설명회니까 참석하지 않아도 손해를 입을 없다’, ‘나중에 보상을 해주면 다 똑같이 해주겠지, 거기 안 갔다고 나쁜 빨리구?’하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정식으로 새개발조합이 구성되어 조합원총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주로 소문이나 회의 참석자의 전언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된다. 이처럼 다민점축이 의한 정보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마당에, 공람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활동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한두 번의 강의식 설명회를 듣고 사업내용을 충분적으로 파악하고 설명의 진위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세 시간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들은 후에 주민들이 가지고 돌아가는 정보는 매우 단순하고 단편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주민대표기구의 非 대표성

사업의 진정은 주민대표기구인 소위 ‘추진위원회(또는 준비위)’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된다. 대체로, 가옥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자체는 별 무리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내용이 밟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개발이익이 생기니까 가옥주에게는 어쨌든 이익이다’라는 편의식 사설이 분위기를 암도한다. 당사자들이 사색한 내막을 모를수록 추진위의 결성 속도는 빠르기 마련이다.

추진위의 대의원은 보통 몇, 반복로 선출되기 때문에 몇, 반장이나 부녀회장 등 소위 그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주로 자영업을 하고 상대적으로 자금에 여유가 있는 층이나, 통장들은 생보사 선정, 취도사업 알선에 개입하고, 사업업자들은 주민을 상대로 급전을 유통해주기도 하므로, 이를 유지 그들의 주민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높으며, 행정관청의 입장을 고려하는 데 적극적이다. 실제로 이들을 대표로 뽑은 이유를, 주민들은 그들이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안다’, ‘구청 사람들을 잘 알고 농경에 밝다’, ‘할주인이 좋고 똑똑하나’ 등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고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이들은 주민진체의 사정을 고려 배려하고 공동선을 찾으며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

추진위의 질행부는 私的인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끌어가고, 뇌물을 받고 긴설회사나 부채가옥주의 입장에 대변하거나, 때로는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대의원들로 세력을 형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절행부를 공격하고 불신임을 내기 한다. 즉 주민대표기구가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성향과 삶건전한 요소를 내보이고 있다. 주민대표기구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본래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독단적으로 권한만을 행사하여 들키 때문에 마찰과 갈등이 계속된다. 이 주민대표기구는 어느 곳으로부터도 공식 청탁을 봄한 경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

○ 이해관계의 상충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원활하고 주민대표기구가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상이한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충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나르나는 사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구 자체는 자연스럽고 타당하다. 문제는 각자의 이익을 패러하는 기준이 오로지 재산가치의 증대라는 단일한 가치에 침중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택’은, 생활공간으로서의 사용가치보다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상품가치를 우선해서 사고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의 부기적인 성격과 주민참여의 불충분이란 문제는 동чин의 앞뒤변과 같다. 그러나 경제적 수익성만이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주민참여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활동외에는 아니나 재개발사업의 주민 참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점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재개발사업의 주민참여 방안

1) 주민참여 확산화를 위한 신결과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체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다. 또 그 연장선에서 ‘주민’의 범위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공식적 민간조직에 대한 ‘합법성’을 부여해야 되며, 민주적 질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방향은 이미 여러곳에서
논의 시작되고 있으므로 재삼스럽게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새개발사업의 무기적 성격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이다. 다만 이 글은 그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범
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주민참여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술하지는 않는다.

○ 주민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

재개발사업의 주민참여는 당연히 재개발구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된다. 일반적인 지역이 아니고, 저소득층들이 밀집된 불량주택지역을 기준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럴듯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의 자격으로 '참여'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단순히 불량주택을 개
량한다는 의미외에도 저소득층의 사회, 경제적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목표 또한
지니고 있으므로 '누가 주체'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세도개선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도 새개발사업에 관한 주
민의 범위는 엄격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주민으로 볼 것이나 아니냐는 문제는 중요하다.
한제, 세입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지구지정 등의 재개발사업에서의 공급
과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외에는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과정에 대한 참여권은 전혀
없다. 그러나 불량주택지역 주민의 60% 이상이 세입자 가구임을 감안하면, 물적
권리중심의 '토지 및 가옥의 소유자'만을 주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소한 세입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건설이나 공동복리시설 설치 등에 관해서는
세입자들도 스스로의 입장을 밝히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 민주적 질차에 대한 가치부여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중요한 도그마 중의 하나는 '능률'과 '신속'이다.
근사정권 아래, 각종 도시계획사업에서 '광범한 의견수렴'과 '신속한 사업추진'
은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의견수렴' 운운하면 자리를 하고 바라
본 것이 그간의 과정이다. 실제 재개발사업에서도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 건설업체나 보지, 가옥 소유자의 큰 불만으로, 심지어 동의나 공람절차들까지 생략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기반 재개발사업이

더 능률적일 수 있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 비공식 민간조직에 대한 인정

문민정부 들어선 지금까지도 ●●위원회, △△협의회 등의 이름이 붙은 소
위 비정부 민간조직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조직을 일기 위해 세3자와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빌리는 것은 인시상정이기도 하
고, 외국에서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자개입'은 큰 절로 따스하게 왔다. 실제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3자개입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개발사업 주민들의 낮은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궁핍을 감안할 때 '사
실없이'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조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종교단체, 전문
사회운동단체 혹은 민간자본단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그 반대의 가능성으
로, 이권을 꾹고려고 전공하는 제3자를 예상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민주적 경쟁
에 의해 주민들이 취사선택할 문제이다.

이제 이러한 선결과제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을 생각
하기에 앞서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특성을 살펴보자.

2) 재개발구역 주민의 특성

일반적으로 불량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들은 (1)건설업 등 경제적 지위
가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적고 (2)사회질체의 생활학년보다 낮으며
(3)농촌출신이 많아 노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들은 트론이나 회의에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추상화시켜
서 잘 표현하지 못 한다. 그리고 도시의 각종 행정기관과 친숙하지도 않고 별다
른 신뢰도 갖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질체를 광범한 공익보다는 사업에 민
감하다. 결국, 이들은 이제까지 도시행정의 '주체'라기 보다는 '대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Wilson 414).

또 일반적으로 중, 상층의 주민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고려한 가운데 '장기적인'
이익 속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 주민들은 '단기적인 비용'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대개 어떤 사업의 부정적인 면에 집착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다(Wilson 414~415).

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직화하는 방식인데, 서구에서도 주로 현지가 많수법에 많이 쓰인 것으로, 실제 전면 철거방식에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조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획가의 시식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조직이 이 결합에 동참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불식시키고, '공정적'인 방식의 조직화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 주민에 대한 계획가의 참여

계획이론에서는 계획가가 주민들과의 계획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실제의 세획풍토는 오히려 그러한 노력들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權氣로 본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계획가의 참여계획은 극히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 실현적으로 이뤄져 올 수 밖에 없었다.

계획이 참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개발자문단'과 같은 공적인 기관이 정부의 예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건축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민간조직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주민조직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관련 학제 연구자,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계개발자문단은 상설조직으로서 각 계획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방식이나 절차 등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¹⁾.

또 이같은 '제개발자문단' 안에는 규격화된 설계기법이 아닌 저소득층의 생활 양식에 맞는 건축행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개발기술부'를 블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합동재개발방식에서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없는 민간건설업체가 '경济성'만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저소득층 고유의 생활양식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이제까지 언급된 많은 사실들이 혹자에게는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비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처방들은 바로 재개발구역의 상태가 '극단적'(Wilson 413)이기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생각하기로 한다.

¹⁾ 일본의 대표적인 학중민 기주지인 同和地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東洋大學 건축학과 대학원생들이 지역내에 거주하면서 部落解消運動단체와 관계 연구자들과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참고할 사례가 된다(内田雄造)

1) 사업계획이 대해 의견을 밝히고 동의 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구성범위는 '사업계획결정일 현재 실지주민'으로 하되 사업자도 포함한다. 단 몇 가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현단계에서 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과 임대조건 및 건설기간 동안의 임시거주대책 및 각종 생활복리시설 건립에 관한 절정 등에만 참여하며, 별도의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구역지정이나 사업계획수립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절차를 생략하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수적인 것으로 한다. 구역지정과 동시에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개발자문단은 이 주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사업시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심의를 거친 사업시행계획안은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으로 확정된 후 집행된다.

3) 사업시행인가와 함께 토지 및 가옥의 소유자가 시행주체인 구역은 주민추진위원회가 '제개발조합'으로 재구성되며, 세입자의 대표기구는 별도로 존속된다. 또 공공이 시행주체일 경우 주민추진위원회와 세입자대표기구는 일주준비기구의 성격을 띠면서 존속된다.

4) 주민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구성 및 운영은 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르며, 자치단체는 대표선정 방법이나 민주적 절차의 준수여부에 관한 감독권을 갖는다.

5) 개발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되며, 도시계획, 건축전문가와 이해관계주민, 전문 판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이해관계주민이 50% 이상 차지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개발자문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장 활동사무소의 제공과 재정보조 및 정보공개의 의무를 갖는다. 또 개발자문단의 구성은 개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그 구성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재개발사업의 실체와 정책적 방향 전환

이진수

다음은 최근 5개월간 실시한 성북(갑)구내 재개발 지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조사는 이 철 의원이 연구소에 발주한 용역에 따라 이루어졌다.

1. 재개발사업이 당면한 문제점

1) 국공유지 불하 가격의 양등으로 인한 사업 어려의 악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 가옥 주는 사업이 시행되면 이를 불하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불하 가격은 대개 싯가에 훨씬 못 미치는 (91년 이전에 40~60만 원 수준)액수였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싸게 불하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큰 유인 요소였다. 재개발은 결국 현재의 재산가치와 개발 후의 재산가치의 차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기본적인 동인을 갖는 것임으로 뛰어난 국공유지가 많을수록 개발이익은 크고 따라서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지구가 먼저 재개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91년 7월 이후 국공유지 불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공시지가는 대개 싯가의 60% 선을 반영하는 수준이다. 그 결과 지금 국공유지 불하가격은 250~300만원에 이르고 무단 점유 가옥주에게는 불하대금 부담이 늘어났으며, 전체로 보아서는 개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2) 개발이익의 감소와 주민 재정착률의 저하

국공유지 불하가격이 현저히 낮았을 때에도 주민들의 재건립 아파트 입주율은 10%를 넘지 못하였다. 하물며 이제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양등은 주민의 재정착율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된다.¹⁾ 결국 대다수 현지 거주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전매하게 된다. 주민들의 재정착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행 재개발사업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다.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는 재개발사업이 거꾸로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1) 이때 원거주인이 재건립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국공유지 20평을 가지고 있는 가옥주가 35평의 아파트를 분양 신청한 경우를 예로 들면 우선, 원래 가지고 있던 가옥 및 토지의 싯가($20 \times 300 = 6,000$ 만 원) + 국공유지 불하대금($20 \times 250 = 5,000$ 만 원) + 추가 부담(평당 분양가: 350 × (30-20) = 3,500만 원) = 총 1억 4천 500만 원이 된다. 여기에다 세입자에게 내줘야 할 전세보증금까지 가산하면 가옥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비해 만약 어떤 실수요자가 일반 분양분에 당첨된다면 $350 \times 30 = 1억 500$ 만 원만 내면 된다. 결국 조합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어처구

다면 '그래도 재산 증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반론은 있을 수 있다. 행정당국에게서나 공식적인 자리에선 절대로 언급되지 않지만 이 논리는 사실상 재개발의 실체이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이 점을 특시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재개발이지만 그래도 추진되어 온 것이다. 고급스럽고 평수가 큰 아파트가 선호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남는 문제는 당연히 재건립 아파트에 입주하기 원하는, 또 입주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적절해야 하고 대불 비율이 높아서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권리의 침해를 원치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다수 주민들이다. 이들은 분명히 피해자들이다. 그들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진 않으나 현지의 재개발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재개발조합의 문제점

흔히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업 전에 가졌던 땅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함께 몇 평의 아파트로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다. 이때 주민들은 동의서를 제출할 때 추진위원회가 홍보했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는데 그 것은 자기 땅 평수에서 1.5배 가량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불비율이 1:1.5라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 이 대불비율은 자꾸 낮아지고 있다.

이렇듯 애초에 홍보했던 내용과 실제 사업 계획이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다. 조합은 좀체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려 하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계산을 어렵거나 못 할 리 없다. 그리고 조합에 물어 본다. 조합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막연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다 잘 될 것이라고 한다. 다시 조합원총회에 나가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요구하지만 집행부는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절차만 일사천리로 진행해 버린다. 대개가 그런 식이다. 사태는 조금씩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의혹을 지나 불신감을 갖게 된 주민들은 조합에 항의한다. 이때쯤 되면 조합이 들이미는 무기가 있다. '당신들이 재개발하자고 해서 인감까지 첨부해서 동의서 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주민들은 여전히 '내가 언제 재개발 하자는 데 동의했지, 이런 사업 내용에 동의 했느냐?'고 물만을 감추지 않는다.

성북구청에서 제작한 주택가량사업안내 책자에 따르더라도 동의서에는 두가지가 있다. '합동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 (이하 지구 동의서)가 그 하나고 '주택가량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동의서' (이하 시행 동의서)라는 게 따로 있다. 둘 다 인감을 첨부하게 되어 있지만 전자는 추진위원장 앞으로 내는 것이고 후자는 재개발조합 설립위원장 앞으로 내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 전자는 생략되고 후자만 받고 있다. 즉, 추진위 단계에서 이미 '시행 동의서'를 받아 버리는 것이다. 이때 구청에서는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재개발사업 동의용'이라고 표기되어

